# ○○○씨 중앙종친회 정관

# 第一章:總則

- 第1條(名稱) 本會는 ○○○氏中央宗親會(以下 本會라 稱한다)라 稱한다.
- 第 2條(所在地) 本會는 서울特別市內에 事務所를 두고 行政區域上의 市道와 市郡區에 各其地方宗親會(以下 地方會라 稱한다)와 宗派宗親會(以下 宗派會라 稱한다)를 둘 수 있다.
- 第3條(性格) 本會는 非營利團體이다.
- 第4條(目的) 本會는 始祖墓所 및 遺蹟 守護保存과 歳享을 奉行하며 崇祖敦宗思想을 涵養하고 宗員의 敎養 向上과 도의앙양 및 文化의 창달로 한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.
- 第5條(事業)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施行한다.
  - 1. 선대문화 유적보전과 발굴선양 및 유업봉찬에 관한 사항
  - 2. 보족보책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
  - 3. 始祖를 爲始한 先祖 歲享奉行에 關한 事項
  - 4. 宗員間의 親睦과 相扶相助에 關한 事項
  - 5. 宗員의 傳統文化 知識 涵養에 關한 事項
  - 6. 奬學事業과 福祉事業에 關한 事項
  - 7. 本會 所屬 財産管理에 關한 事項
  - 8. 宗報의 編纂 및 刊行에 關한 事項
  - 9. 其他 必要한 附帶事業에 關한 事項
- 第6條(顧問) 本會의 運營에 必要한 常任 및 非常任顧問을 둘 수 있으며 顧問은 會長 團의 推戴를 받아 原則的으로 本會 運營에 關한 諮問을 한다. 但, 各種會議에 參席하 였을 때에는 發議權을 갖는다.

# 第二章:宗 員

- 第7條(資格) 본회의 종원 자격은 ○○○씨 성년 남녀로 한다.
- 第8條(權利) 本會의 宗員은 本 定款의 定하는 바에 따라 宗事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.
- 第9條(義務) 本會의 宗員은 다음 各號의 義務를 진다.
  - 1. 定款 및 諸規程의 遵守
- 2. 總會와 理事會 決議事項의 履行
- 3. 宗費 및 諸負擔金의 納付

#### 第10條(懲戒)

- 1. 本會의 宗員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때에는 會長은 遲滯없이 會長團會議에 回 附하여 決議를 거친 후 懲戒할 수 있다.
  - ① 第9條의 義務를 불이행한 者
- ② 本會의 名譽를 毁損한 者
- ③ 本會의 事業을 妨害한 者 ④ 本會에 財政的인 損失을 끼친 者
- ⑤ 本會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毀損한 者
- 2. 懲戒의 種類는 別途의 懲戒規程으로 定한다.

### 第三章:任 員

第11條(任員)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.

- 1. 會 長:1人(當然職 始祖太尉公宗中 門長 및 理事長)
- 2. 副 會 長:35人(當然職 理事:專擔 10人, 市道 15人(支派 10人)
- 3. 運營委員:60人(當然職 理事)
- 4. 常任理事: 1人
- 5. 理 事:700人(市道 各 5人, 市郡區 各 3人, 宗派 各 3人)
- 6. 監事:人(海外 1人 包含)

第12條(選出) 本會의 任員 選出方法은 다음과 같다.

- 1. 會長: 總會에서 選出한다.
- 2. 副會長: 專擔副會長은 會長의 指名으로 總會에서 認准하고 各 市道會長 및 宗派 會 長은 當然職으로 한다.
- 3. 運營委員: 會長의 指名으로 會長團 會議에서 認准한다. 各 市道, 市郡區 會長은 當 然職으로 한다.
- 4. 常任理事: 會長이 指名한다.
- 5. 理事:地方會長 및 宗派會長의 推薦으로 總會에서 認准한다.
- 6. 監事:總會에서 直接 選出한다.

#### 第13條(仟期)

- 1.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. 但, 會長은 1次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으며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.
- 2.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.

#### 第14條(會長)

- 1.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宗務를 總統轄하되 始祖太尉公宗中의 宗事도 當然職門 長으로서 管掌한다.
- 2. 會長은 各種 會議의 議長이 되며 各種 會議에서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.

#### 第15條(副會長)

- 1. 부회장 및 전담부회장은 소관종무를 총괄하며 회장을 보좌한다.
- 2. 회장 유고시는 전담부회장 중 연고 항렬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.

#### 第16條(副會長)

- 1. 專擔 副會長의 業務는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.
  - ① 企劃副會長:事務處 企劃室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.
  - ② 總務副會長:事務處 總務部, 宗規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.
  - ③ 組織副會長:事務處 組織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.
  - ④ 財政副會長:事務處 財政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.
  - ⑤ 文化副會長:事務處 祭典部 文化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.
  - ⑥ 獎學副會長:事務處 教育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.
  - ⑦ 宗報副會長:事務處 弘報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.
  - ⑧ 靑年副會長:事務處 靑年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.

- ⑨ 女性副會長:事務處 婦女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.
- ⑩ 宗務副會長:族譜 및 譜學의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.
- 2. 市道 會長인 當然職 副會長은 屬 地方會를 代表하여 會長을 補佐한다.
- 3. 宗派會長인 當然職 副會長은 宗派를 代表하여 會長을 補佐한다.
- 第17條(運營委員) 運營委員은 本會의 財政 및 業務運營을 支援한다.
- 第18條(常任理事) 常任理事는 事務處를 管掌하며 總會 및 理事會 議決事項 또는 會長 으로부터 委任된 事項을 處理한다.

第19條(理事) 理事는 總會 및 理事會에 參席하여 本會의 宗務에 관한 事項을 審議한다. 第20條(監事) 監事는 本會의 財政 等 運營에 關한 事項을 必要에 따라 監査하고 이를 總會 및 理事會에 報告하며 事案에 따른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.

# 第四章:總會

第21條(構成) 總會는 代議員 總會로 하되 顧問, 諮問委員, 會長, 副會長, 運營委員, 理 事를 當然職 代議員으로 한다.

第22條(總會召集)

- 1.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.
- 2. 定期總會는 年 1回 2月中에 한다.
- 3. 臨時總會는 在籍代議員 100名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나 會長團 決議 또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된 때 會長이 召集한다.

第23條(附議事項) 總會는 本會의 最高 議決機關이며 附議할 事項은 다음과 같다.

- 1.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
- 2.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
- 3. 任員選出에 關한 事項
- 4. 定款改正에 關한 事項
- 5. 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6. 理事會에서 附議한 事項
- 7. 其他 本會 運營에 關한 事項

第24條(定足數) 本會의 各種 會議는 特別한 規程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出席宗員으 로 成立되며 出席宗員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.

#### 第五章: 會長團會

第25條(會長團會議 構成) 會長團會는 常任顧問, 會長, 副會長, 監事로 構成한다. 但, 監 事는 議決權이 없다.

第26條(召集 等) 會長團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이를 召集한다.

第27條(附議事項) 會長團會는 總會에서 委任받은 다음 事項을 審議處理한다.

- 1.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
- 2.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
- 3. 顧問 推戴에 關한 事項
- 4. 宗員 懲戒에 關한 事項
- 5. 定款改正에 關한 事項
- 6. 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
- 7. 其他 本會 運營에 關한 事項

#### 第六章:理事會

第28條(構成) 理事會는 任員으로 構成한다. 但, 顧問도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.

第29條(理事會 召集 等) 理事會는 理事 100名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나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이를 召集한다.

第30條(附議事項) 理事會에 附議할 事項은 다음과 같다.

- 1.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
- 2. 總會에 附議할 다음의 案件 審議
  - 가. 事業計劃 및 豫算・決算에 關한 事項
  - 나. 定款改正에 關한 事項
  - 다. 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
- 3. 其他事項

# 第七章:財 政

第31條(財産) 本會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.

第32條(基本財産) 基本財産은 本會 所有 및 始祖太尉公宗中 所有 不動産으로 한다.

第33條(普通財産) 普通財産은 基本 財産外의 動産으로 한다.

第34條(財源) 本會는 다음의 財源으로 歲入과 歲出에 充當한다.

1. 基本財産의 果實

2. 贊助金 및 宗費

3. 事業收益金

4. 其他 收入金

第35條(會計區分) 本會는 經常運營을 爲한 一般會計와 事業을 營爲하는 特別會計로 區 分하여 處理한다.

第36條(會計年度) 本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를 準用한다.

第37條(報酬 等)

- 1. 第38條 3項의 支給은 一般會計 豫算範圍 內에서 한다.
- 2. 報酬, 旅費, 車馬費等의 支給規程은 別途로 定한다.

# 第八章:事務處

第38條(機構)

- ① 本會를 效率的으로 管理 運營하기 爲하여 宗務를 處理할 事務處를 두고 事務處에 企劃室,總務部,組織部,財政部,祭典部,文化部,教育部,弘報部,宗規部,婦女部,青年部를 둔다.
- ② 事務處長은 常任理事를 當然職으로 하고 各 室, 部長은 理事 中에서 會長이 任免하 되 常任理事, 總務, 弘報部長은 常勤으로 하고 其外 室, 部長은 非常勤으로 한다.
- ③ 中央會의 常任理事는 (財)○○奬學會의 常任理事를 兼職한다.
- ④ 中央會의 事務處 職員은 (財)○○奬學會의 業務를 支援한다.
- ⑤ 常勤任員 및 職員은 豫算範圍 內에서 報酬, 旅費 또는 車馬費等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.

第39條(各 部暑 任務) 事務處 內에 各 部暑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.

企劃室:主要 宗策 企劃 및 調整

總務部:庶務, 經理 및 議事錄 整理와 他部에 屬하지 않은 事項

組織部:中央 및 宗派會와 地方會의 組織 및 管理

財政部:財産 및 基金管理外 運營財源 調達 및 福祉事業 管理

祭典部:始祖, 三齋 歲享 및 武康王陵(雙陵) 大王祭와 箕聖殿 祭享奉行

文化部:先祖의 遺事 遺蹟의 發掘,宣揚 및 傳統文化 知識 涵養과 譜冊 等 發刊

敎育部:宗員의 奬學事業 管理 및 先祖의 遺事譜學에 關한 敎育

弘報部:宗報의 編輯 및 刊行

宗規部: 宗員의 懲戒事項에 該當되는 해당 行爲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作成하여 會長團 會議에 報告하다.

青年部:全國 市道, 市郡區 青年會 組織의 活性化 方案 및 企劃立案과 組織管理 婦女部:全國 市道, 市郡區 婦女會 組織의 活性化 方案 및 企劃立案과 組織管理

## 第九章:補 則

第40條(定款改正) 本會의 定款改正은 理事會와 總會의 各各 3분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.

#### 第41條(규정)

- ① 본회의 운영상 종보, 제전, 조직, 문화, 재정, 종사분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등의 구성과 단위장학회의 조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② 본 정관 제5조 7호의 규정에 의거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위장학회를 구성할 수 있다. 단위장학회는 장학금 삼천만원 이상 출연으로 구성한다. 출연기금에서 발생되는 소득금액은 전액 단위장학회에 부여하고 장학생 추천 및 장학금 수여도 단위장학회에 귀속하고 단위장학회장은 장학회 이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.

第42條(準則) 本會의 定款에 明示規程이 없는 事項은 通常實例에 따른다.

# 【附 則】

第1條(施行) 本會의 定款은 2003年 8月 26日 改正 施行한다.

第 2 條(經過措置) 本 定款 制定 施行前 ○○○氏中央宗親會 規約(1958. 4. 1. 施行, 1974. 8. 1. 改正, 1975. 2. 27. 改正, 1977. 3. 1. 改正, 1984. 6. 26.改正, 1987. 2.26. 改正, 1991. 1. 29. 改正)에 의한 一切의 宗務行為는 本 定款에 의하여 處理한 것으로 看做한다.

但, 現 任員 等의 任期는 舊規約을 適用하고 그 殘餘期間으로 한다.

第3條(廢止) 本 定款의 發效와 同時 ○○○氏中央宗親會規約(1958. 4. 1. 施行, 1991. 1. 29. 改正)은 廢止한다.

# 【징계규정】

第1條(목적) 이 규정은 본회 정관 제10조(징계) 및 제41조(규정)에 따라 종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第 2條(징계대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종원에 대한 회장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단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.

1. 정관 제9조의 의무불이행한 자

2.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

- 3.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
- 4. 본회에 재정적인 손실을 끼친 자
- 5. 본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훼손한 자

# 第3條(징계의 종류)

- 1.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 - 계고
- ② 정권
- ③ 제명
- 2. 정권은 자격정지 2년 이상 5년 이내 회원자격 정지
- 3. 제명은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.
- 第4條(통고) 징계는 회장이 회장단회의 결의를 얻어 이를 문서로서 피징계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- 第 5 條(조치) 정권 처분된 자는 정권과 동시에 그 기간 중에 일체의 임원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또 임원직에 있는 자는 해임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第6條(해제) 종원이 제명 또는 정권처분을 받은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종무에 공헌이 지대하다고 인증될 경우에는 복원 또는 정권을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의 처리 절차는 징계의 경우에 준한다.

# 【부 칙】

第1條 이 규정은 200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